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9. 7. 14.

사회건설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6월 23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7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09년 7월 2일)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제안 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박주현)

가. 개 정 이 유

-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전거 수리서비스의 유·무상 제공 근거와 이용자 범위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돈이 없도록 하고, 자전거정비소 운영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 요 내 용

- 자전거정비소를 경우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(안 제2조제3호)
- 현행 조례에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자 범위를 “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”로, 영등이자전거의 이용자 범위는 “관내에 거주하는 주민”으로 각각 다르게

규정하고 있어 실제 자전거대여소에서 영통이자전거를 대여할 때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, 영통이자전거의 이용자 범위도 “자전거를 이용하는 자” 로 확대하고자 함(안 제2조제5호)

- 자전거정비소와 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되, 자전거정비소의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비용을 자전거 소유자 또는 정비의뢰자가 부담하도록 함(안 제10조 제2항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: 이남식)

- 본 조례안은 자전거정비소 운영 시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무료로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품비용에 대해서는 자전거 소유자 및 정비의뢰자가 부담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며, 관련용어의 정의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審査結課 : 原案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2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전거 수리서비스의 유·무상 제공 근거와 이용자 범위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돈이 없도록 하고, 자전거정비소 운영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전거정비소를 경우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
(안 제2조제3호)
- 나.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자와 영릉이자전거의 이용자 범위규정에 혼돈이 없도록 “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” 로 일치시킴. (안 제2조제5호)
- 다. 자전거정비소와 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되, 자전거정비소의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비용은 자전거 소유자 또는 정비의뢰자가 부담하도록 함.
(안 제10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
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 - (2) 입법예고(2009. 3. 26 ~ 4. 15) 결과 : 의견없음
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사무 없음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”를 “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” 로 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”을 “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” 로 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자전거정비소·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. 다만 자전거정비소의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비용은 자전거 소유자 또는 정비의뢰자가 부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“자전거정비소”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<u>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</u> 4. “자전거대여소”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빌려주는 시설을 말한다. 5. “영릉이자전거”란 <u>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</u> 빌려주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. <p>제10조(자전거정비소·대여소의 설치·운영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생략) ② 자전거정비소·대여소의 <u>이용요금,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</u> ③ (생략) 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“자전거정비소”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<u>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</u> 4. “자전거대여소”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빌려주는 시설을 말한다. 5. “영릉이자전거”란 <u>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</u> 빌려주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. <p>제10조(자전거정비소·대여소의 설치·운영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생략) ② 자전거정비소·대여소의 이용요금은 <u>무료로 한다. 다만 자전거정비소의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비용은 자전거 소유자 또는 정비의뢰자가 부담한다.</u> ③ (생략)